

KCS 64 10 20 : 2023

자재관리

2023년 01월 개정



건설기준 제·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

이 기준은 발간 시점부터 사용하며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 공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준 제·개정 연혁

- 이 기준은 항만 및 어항공사 표준시방서 KCS 64 10 20 자재관리로 제·개정 연혁은 다음과 같다.

건설기준	주요내용	제·개정 (년. 월)
항만공사 표준시방서	• 항만공사 표준시방서 제정	제정 (1967.12)
항만공사 표준시방서	• 건설공사의 대형화와 다양화, 새로운 공법 및 자재의 발전 등 건설기술 발전에 현추세(現趨勢) 반영, 개정	개정 (1977.12)
항만공사 표준시방서	• 해외자료의 분석과 관련 각종 시방서, 시설기준 및 계규정 등과 상호 연관성을 검토하여 반영, 개정	개정 (1986.12)
항만공사 표준시방서	• 건설환경의 변화와 부실방지를 위한 품질향상 기준을 구체화 하고, 환경보호와 기반조사 등 세부적인 기준 보완, 개정	개정 (1996.12)
항만 및 어항공사 표준시방서	• 항만 및 어항공사 표준시방서로 개칭하고, 한국산업규격(KS) 및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등 타 기준의 개정내용 반영 등 대폭 개정	개정 (2005.11)
항만 및 어항공사 표준시방서	• 태풍, 이상과랑 및 지진해일 등 이상기후 대응과 저탄소, 온실 가스저감 등 녹색항만 및 친환경 설계 반영, 매스 콘크리트, 상치콘크리트, 필터매트, 함선, 마리나시설 관련 시방 보완, 개정	개정 (2012.12)
항만 및 어항공사 표준시방서 시방코드(KCS 64 00 00)	•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기존 표준시방서를 시방코드 (KCS 64 00 00)로 개편하고, 타 분야 시방코드와 중복·상충 항목을 비교, 검토하여 보완	개정 (2017.08)
항만 및 어항공사 표준시방서 시방코드(KCS 64 00 00)	• 기존 표준시방서와 전문시방서를 이원화하여 관리하던 항만 건설공사 시공기준을 표준시방서로 통합 코드화하고, 특수 분야 공사는 전문시방서로 별도 관리함으로써 각각의 역할과 기능 분담을 명확하게 재정립하여 코드체계로 개편	개정 (2018.04)
항만 및 어항공사 표준시방서 시방코드(KCS 64 10 20)	• 중대재해처벌법 등 최근 강화된 건설안전 관련 규정 반영 및 국가건설기준 공통공사 표준시방서 개정사항 등을 현행화 하여 건설안전과 품질향상을 도모 및 코드번호 등 개정	개정 (2023.01)

제 정 : 2017년 8월 16일 개 정 : 2023년 01월 30일
 심 의 : 중앙항만정책심의회
 소 관 부 서 : 해양수산부 항만기술안전과
 관련단체 (작성기관) : 한국항만협회

-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고시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목 차

1. 일반사항	1
1.1 적용범위	1
1.2 참고기준	1
1.3 용어의 정의	1
1.4 적용기준	2
1.5 반입	2
1.6 지급(관급)자재관리	3
1.7 자재의 보관, 운반, 취급	4
 2. 자재	5
 3. 시공	5

KCS 64 10 20 자재관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 (1) 이 기준은 공사에 사용되는 공사용 자재의 관리에 필요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 (2) 이 기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KCS 10 10 20 자재관리와 관련 법규에 따른다.
- (3) 이 기준의 적용순서는 KCS 64 10 05 공사일반(1.1.2 적용순서)에 따른다.

1.2 참고기준

1.2.1 관련법규

건설기술진흥법

- 건설공사 품질관리규정(해양수산부)
-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국토교통부)

산업표준화법

1.2.2 관련기준

KCS 64 10 10 20 자재관리

1.2.3 관련표준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 자재 : 이 기준에서 사용되는 자재는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지급(관급)자재를 제외한 공사용 자재를 말함

1.4 적용기준

1.4.1 사용자재

- (1) 사용자재는 KCS 10 10 20 (1.4 적용기준)에 따른다.

1.4.2 재료의 검사

- (1) 재료의 검사는 KCS 10 10 20 (1.5 재료의 검사)에 따른다.

1.4.3 수급인의 책임

- (1) 수급인이 자재를 사용할 때 품질시험·검사 등 이 기준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적절한 절차를 거쳤다 하더라도 사용자재의 불량에 의한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수급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

1.5 반입

1.5.1 자재수급계획서

- (1) 수급인은 해당 공사의 공정계획에 맞추어 주요 자재 및 관급자재 수급 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5.2 반입시기

- (1)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공사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반입해야 하며 설계도서 또는 이 기준과 기타 관련 법규에 의하여 품질시험·검사 등이 필요할 경우에는 소요기간을 감안하여 현장에 반입해야 한다.
- (2)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가 자재 품질관리와 관련하여 설계도서 또는 이 기준서, 기타 관련 법규에 의하여 행하는 시험, 검사 등을 적절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

1.5.3 자재에 대한 품질보증

- (1) 수급인은 자재의 반입 시에는 차량별로 시험결과 등이 기재된 납품서를 납품자로부터 받아 공사감독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용 자재에 대하여 품질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국공립 시험기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자)가 작성한 시험성적서 등 품질보증에 관한 자료나 공사감독자의 참여하에 품질시험 또는 검사 등에 의한 품질의 확인을 자재의 생산자 또는 수입·판매하는 자에게 요구해야 한다.

- (2) 자재의 품질확보와 관련하여 발주자에 대한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 (3) 레미콘 정기점검 실시대상 건설공사의 공사감독자와 수급인은 레미콘 공장 운전실에서 출력된 자동계량기록지 등 레미콘 생산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 (4) 수급인은 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에 따라 반입 자재에 대한 현장시험을 실시해야 하며, 현장에서 품질시험을 실시할 수 없는 자재는 공사감독자와 공동 입회하여 생산공장에서 시험을 실시하거나 의뢰시험을 요청하여 시험성과를 사전에 검토하여 품질을 확인해야 하고, 시험 시 사진촬영 등 식별 가능한 정보를 기록관리 해야 한다. 다만, 한국산업표준 인증제품, 기타 관련 법규에 따라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증받은 재료는 품질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1.6 지급(관급)자재관리

1.6.1 검사 및 확인

- (1) 수급인은 반입된 지급(관급)자재의 다음 사항에 대하여 검사 및 확인을 시행하고 그 결과 문제점이나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내용을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지급(관급)자재의 공급조건이 설치도(設置渡)인 경우 발주자의 지시에 따른다.
 - ① 납품서
 - ② 품질, 규격, 성능 및 수량 등
 - ③ 설계도서와의 적격여부 및 제품자료, 견본과의 일치 여부
 - ④ 납품기일
 - ⑤ 시험성과표 또는 품질검사확인서(관리시험 또는 검사를 필요하여 납품되는 품목)

1.6.2 지급(관급)자재의 품질 등

- (1) 발주자가 공급하는 지급(관급)자재와 관급에서 사급으로 변경된 자재 및 사급에서 관급으로 변경된 자재의 품질, 규격 및 납품방법 등은 발주자가 별도로 정한 것 이외에는 해당 자재의 지급(관급)자재구입 기준서에 따른다.

1.6.3 잔재 및 부족재

- (1) 지급(관급)자재(설치도(設置渡)인 지급(관급)자재를 제외한다)중 공사에 사용하고 남은 잔재는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수급인의 부담으로 운반, 적치하고 관리해야 하며 부족재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구해야 한다. 다만 부족재는 파손 및 분실된 것은 제외한다.

1.6.4 전환된 잔재의 수령

- (1) 수급인은 다른 곳에서 전환된 지급(관급)자재에 대하여 품질상의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수령해야 한다. 다만, 품질상의 특별한 하자가 발견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고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6.5 지급(관급)자재의 인도 및 관리지침

- (1) 지급(관급)자재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장소에서 수급인에게 인도되거나 공급되며 수급인에게 인도된 후의 지급(관급)자재에 대한 관리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1.6.6 지급(관급)자재의 대체자재 사용

- (1) 지급(관급)자재의 공급이 지체되어 공사가 지연될 우려가 있을 때 수급인은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수급인이 보유한 자재 등 동등 이상의 규격 및 품질의 신규 자재를 구입하여 대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별도의 품질검사를 수행하여 합격한 제품만 사용해야 한다.

1.6.7 대체자재 사용대가의 지급

- (1) 발주자는 앞의 1.6.6항에 의하여 대체 사용한 자재를 현품으로 반환하거나 또는 대체 사용 당시의 가격에 의하여 그 대가를 준공금 지급 시까지 수급인에게 지급한다.

1.6.8 지급(관급)자재의 인도조건 변경

- (1)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지급(관급)자재의 수량, 인도시기, 인도장소를 변경 요청할 수 있다.

1.7 자재(지급 또는 관급자재 포함)의 보관, 운반, 취급

- (1) 수급인은 자재의 보관을 위한 부지 또는 창고를 준비해야 하며 그 위치를 공사감독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 (2) 보관 장소가 사유재산일 경우에는 소유자 또는 임대인의 서면 승인 없이 보관 장소로 사용할 수 없으며, 공사감독자가 요구하면 임대인의 서면 승인 또는 동의 문서 사본을 제출하고, 원본은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보관 장소의 사용이 끝나면 필요한 경우 수급인의 부담으로 이를 원상 복구해야 한다.
- (3) 이 기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KCS 10 10 20 (1.9 자재의 운반, 보관, 취급)에 따른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자재관리

집필위원	분야	성명	소속	직급
(2023년 개정)	총괄	안익성	(주)항도엔지니어링	사장
	항만및해안	김진호	(주)서영엔지니어링	부사장
	항만및해안	류혁근	(주)삼영기술	부회장
	품질및안전	강기중	코모씨스(주)	대표이사
	품질및안전	이상웅	(주)항도엔지니어링	부사장
	항만기술기준 전문기관	이재진	한국항만협회	부장
	항만기술기준 전문기관	박수현	한국항만협회	차장
	항만기술기준 전문기관	홍성현	한국항만협회	과장

심의위원	분야	성명	소속	직급
(2023년 개정)	항만및해안	고장희	S K 에코플랜트(주)	프로
	항만및해안	이명호	(주)헤인이앤씨	부사장
	항만및해안	조충현	인천항만공사	실장
	토목시공	류성구	S K 에코플랜트(주)	프로
	토목시공	문성현	(주)건화	이사
	토목시공	허정석	여수광양항만공사	실장

중앙항만정책심의회	분야	성명	소속	직급
(2023년 개정)	의 장	이 수 호	해 양 수 산 부	국 장
	항 만 개 발	이 종 인	전 남 대 학 교	교 수
	항 만 개 발	우 수 한	중 앙 대 학 교	교 수
	항 만 시 설 기 술 기 준	김 영 택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연 구 위 원
	항 만 시 설 기 술 기 준	김 인 호	강 원 대 학 교	교 수
	항 만 시 설 기 술 기 준	정 민 영	(주) 유 신	부 사 장
	항 만 시 설 기 술 기 준	조 미 라	인 덕 대 학 교	교 수
	항 만 시 설 기 술 기 준	송 정 화	부 산 항 만 공 사	부 장

해양수산부	성명	소속	직책
	이 수 호	항 만 국	국 장
	전 충 남	항 만 기 술 안 전 과	과 장
	이 귀 섭	항 만 기 술 안 전 과	시설사무관
	김 슬 기	항 만 기 술 안 전 과	시 설 주 사

표준시방서
KCS 64 10 20 : 2023

자재관리

2017년 8월 16일 제정
2018년 4월 17일 개정
2023년 1월 30일 개정

(관련단체)

한국항만협회

07271 서울시 영등포구 양산로 53(양평동 3가)

월드메르디앙 비즈센터 707호

☎ 02-2165-0091~3 E-mail : kpha@koreaports.or.kr

<https://www.koreaports.or.kr>

항만기술기준센터

07271 서울시 영등포구 양산로 53, 705호

(양평동 3가, 월드메르디앙비즈센터)

☎ 02-2165-0103~6 E-mail : kpcs@koreaports.or.kr

<https://kpcs.portcals.go.kr>

해양수산부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항만기술안전과

☎ 044-200-5951, 5952

<https://www.mof.go.kr>